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2012.09.22)되어 구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징수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 신설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수수료 신설 : 2,000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 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신설 : 1,000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 요율변경

종 목	해당부서	단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문화체육 과	1건	50,000원	10,000원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변경등록 신청	문화체육 과	1건	25,000원	5,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부동산 정보과	1건	20,000원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다 른 안경 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홍보관광 과	1건	10,000원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6 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 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홍보관광 과	1건	10,000~ 17,5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제3항본문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홍보관광 과	1건	해당수수료 + 5천원	20,000원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지역경제 과	1건	10,000원	20,00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수료 종목 신설 3종, 수수료 요율 인하 13종, 수수료 요율 인상 1종으로
- 수수료 종목 신설은 안 별표 제1호 다목 4)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수수료 2,000원 신설
- 안 별표 제1호 다목 5)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신설

- 안 별표 제2호 마목 26)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4,000원 신설
- 수수료 요율 인하는 안 별표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

종 목	해당부서	단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문화체육 과	1건	50,000원	10,000원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변경 등록신청	문화체육 과	1건	25,000원	5,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부동산 정보과	1건	20,000원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홍보관광 과	1건	10,000원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 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	홍보관광 과	1건	10,000~ 17,5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신청	홍보관광 과	1건	해당수수료 + 5천원	20,000원

- 수수료 요율 인상은 안 별표 제2호 차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

종 목	해당부서	단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지역경제 과	1건	10,000원	20,000원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4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2012.09.22)되어 구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징수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설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수수료 신설 : 2,000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신설 : 1,000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 나. 요율변경

종 목	해당부서	단 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문화체육 과	1건	50,000 원	10,000 원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변경등록신청	문화체육 과	1건	25,000 원	5,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부동산 정보과	1건	20,000	10,000 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 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 원	10,000 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 원	10,000 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홍보관광 과	1건	10,0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 청 수수료	홍보관광 과	1건	10,000 ~ 17,5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본문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홍보관광 과	1건	해당수수료 + 5천원	20,000 원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 업 신고	지역경제 과	1건	10,000 원	20,000 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10.18~11.07) 결 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56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1호 제목의 “(15종)”을 “(17종)”으로, 제2호 제목의 “(71종)”을 “(72종)”으로 한다.

별표 중 제1호 다목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 종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4)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	1건	2,000	
5) 공장등록대상 등본 발급	1건	1,000	

별표 중 제2호 가목 ‘인·허가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	5,000	

별표 중 제2호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별표 중 제2호 다목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별표 중 제2호 마목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건	5,000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건	5,000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1건	5,000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1건	5,000	
26)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	4,000	

별표 중 제2호 차목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5종) (단위 : 원)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7종)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종 목</th> <th style="width: 15%;">단위</th> <th style="width: 25%;">수수료액</th> </tr> </thead> <tbody> <tr> <td>가~나.(생략)</td> <td></td> <td></td> </tr> <tr> <td>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3) (생략)  &lt;신설&gt; &lt;신설&gt;</td> <td></td> <td></td> </tr> <tr> <td>라.~사.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나.(생략)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3) (생략)  <신설> <신설>			라.~사.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종 목</th> <th style="width: 15%;">단위</th> <th style="width: 25%;">수수료액</th> </tr> </thead> <tbody> <tr> <td>가~나.(생략)</td> <td></td> <td></td> </tr> <tr> <td>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3) (생략) <u>4)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u> <u>5)공장등록대상등본 발급</u></td> <td>1건 1건</td> <td><u>2,000</u> <u>1,000</u></td> </tr> <tr> <td>라.~사.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나.(생략)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3) (생략) <u>4)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u> <u>5)공장등록대상등본 발급</u>	1건 1건	<u>2,000</u> <u>1,000</u>	라.~사.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나.(생략)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3) (생략)  <신설> <신설>																																																	
라.~사.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나.(생략)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3) (생략) <u>4)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u> <u>5)공장등록대상등본 발급</u>	1건 1건	<u>2,000</u> <u>1,000</u>																																															
라.~사. (생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1종)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종 목</th> <th style="width: 15%;">단위</th> <th style="width: 25%;">수수료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td> <td>1건 1건</td> <td><u>50,000</u> <u>25,000</u></td> </tr> <tr> <td>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 7) (생략)</td> <td>1건</td> <td><u>20,000</u></td> </tr> <tr> <td>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4) (생략)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u>인정신청</u></td> <td>1건 1건</td> <td><u>20,000</u> <u>20,000</u></td> </tr> <tr> <td>라. (생략)</td> <td></td> <td></td> </tr> <tr> <td>마.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사항 1) 3) 5) 9)~13) 15)~16) 18)~19) 21)~25) (생략)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u>허가업+등록업+신고업중 2이상 복합</u>)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lt;신설&gt;</td> <td>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td> <td><u>10,000</u> <u>10,000</u> <u>10,000</u>  <u>해당수수료+5천원(2개 이상 복합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의 수수료+5천원)</u> <u>·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수수료의 1/2포함</u> <u>10,000</u> <u>10,000</u> <u>10,000</u></td> </tr> <tr> <td>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생략) 2) 비료수입업 신고</td> <td>1건</td> <td><u>10,000</u></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u>50,000</u> <u>25,000</u>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 7) (생략)	1건	<u>20,000</u>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4) (생략)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u>인정신청</u>	1건 1건	<u>20,000</u> <u>20,000</u>	라. (생략)			마.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사항 1) 3) 5) 9)~13) 15)~16) 18)~19) 21)~25) (생략)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u>허가업+등록업+신고업중 2이상 복합</u> )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u>10,000</u> <u>10,000</u> <u>10,000</u>  <u>해당수수료+5천원(2개 이상 복합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의 수수료+5천원)</u> <u>·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수수료의 1/2포함</u> <u>10,000</u> <u>10,000</u> <u>10,000</u>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생략)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u>10,000</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종 목</th> <th style="width: 15%;">단위</th> <th style="width: 25%;">수수료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td> <td>1건 1건</td> <td><u>10,000</u> <u>5,000</u></td> </tr> <tr> <td>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 7) (생략)</td> <td>1건</td> <td><u>10,000</u></td> </tr> <tr> <td>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4) (생략)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u>개설등록 신청</u></td> <td>1건 1건</td> <td><u>10,000</u> <u>10,000</u></td> </tr> <tr> <td>라. (생략)</td> <td></td> <td></td> </tr> <tr> <td>마.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사항 1) 3) 5) 9)~13) 15)~16) 18)~19) 21)~25) (생략)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u>26)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u></td> <td>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td> <td><u>5,000</u> <u>5,000</u> <u>5,000</u>  <u>20,000</u>  <u>·5,000</u>  <u>5,000</u> <u>5,000</u> <u>5,000</u> <u>4,000</u></td> </tr> <tr> <td>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생략) 2) 비료수입업 신고</td> <td>1건</td> <td><u>20,000</u></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u>10,000</u> <u>5,000</u>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 7) (생략)	1건	<u>10,000</u>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4) (생략)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u>개설등록 신청</u>	1건 1건	<u>10,000</u> <u>10,000</u>	라. (생략)			마.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사항 1) 3) 5) 9)~13) 15)~16) 18)~19) 21)~25) (생략)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u>26)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u>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u>5,000</u> <u>5,000</u> <u>5,000</u>  <u>20,000</u>  <u>·5,000</u>  <u>5,000</u> <u>5,000</u> <u>5,000</u> <u>4,000</u>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생략)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u>20,000</u>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u>50,000</u> <u>25,000</u>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 7) (생략)	1건	<u>20,000</u>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4) (생략)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u>인정신청</u>	1건 1건	<u>20,000</u> <u>20,000</u>																																															
라. (생략)																																																	
마.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사항 1) 3) 5) 9)~13) 15)~16) 18)~19) 21)~25) (생략)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u>허가업+등록업+신고업중 2이상 복합</u> )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신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u>10,000</u> <u>10,000</u> <u>10,000</u>  <u>해당수수료+5천원(2개 이상 복합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의 수수료+5천원)</u> <u>·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수수료의 1/2포함</u> <u>10,000</u> <u>10,000</u> <u>10,000</u>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생략)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u>10,000</u>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u>10,000</u> <u>5,000</u>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 7) (생략)	1건	<u>10,000</u>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4) (생략)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 치과기공소 <u>개설등록 신청</u>	1건 1건	<u>10,000</u> <u>10,000</u>																																															
라. (생략)																																																	
마.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사항 1) 3) 5) 9)~13) 15)~16) 18)~19) 21)~25) (생략) 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4)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6)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4)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7)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변경 2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u>26)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u>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u>5,000</u> <u>5,000</u> <u>5,000</u>  <u>20,000</u>  <u>·5,000</u>  <u>5,000</u> <u>5,000</u> <u>5,000</u> <u>4,000</u>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생략)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u>20,000</u>																																															
3.~4. (생략)				3.~4. (생략)																																													